

[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]

1. **계약기간**-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.

2. **계약목적**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.

3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-월 이용료부담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(다만,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)

-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.

◎ 노인장기요양기관 (재가기관) 기본수가 (월한도액) (2023.01.01) 기준

등 급	월간한도액	1일서비스가능시간	서비스가능일수: (참조)
1등급	1,885,000	240분 / 65,000원	29일
2등급	1,690,000		26일
3등급	1,417,200	180분 / 52,880원	26일
4등급	1,306,200		24일
5등급	1,121,100	120~180분	21일
인지지원등급	624,600원	주야간보호만 사용가능(방문요양 이용불가)	

◎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(2023.01.01.) 기준

구 분	금액(원)	본인부담금 (15%)	구 분	금액(원)	본인부담금 (15%)
30분이상	16,190	2,429	150분이상	46,970	7,046
60분이상	23,480	3,522	180분이상	52,880	7,932
90분이상	31,650	4,748	210분이상	58,930	8,840
120분이상	40,280	6,042	240분이상	65,000	9,750

◎ 본인부담액

- 일반대상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%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%
- 의료급여수급권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6%
- 감경대상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% 또는 9%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

-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㉠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
- ㉡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㉢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
- ㉣기관이 실시하는 상담,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하여 또는 부당한 대우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㉠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- ㉡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부담의무
- ㉢건강상태 이상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- ㉣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㉤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
5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㉠서비스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㉡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㉢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㉣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- ㉤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
- ㉥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6. 이용료 등 수납

-서비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이용료는 현금수납 또는 계좌입금으로 한다

.

7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

-서비스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.